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6329-1010 / 운영시간 10:00~16:0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점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2019.5.3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현재 전매 가능)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19.5.16.(목)	2026.7.15.(수)	2026.7.20.(월)	2026.7.23.(목)	2026.7.27.(월)	2026.7.30.(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7.15.(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79**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5.16.(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19000415** 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유상옵션(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 완료된 유상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이 체결이 가능하오니, 정확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취소, 불가)

■ 본 주택은 최초 분양 완료 후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지로써, 당첨자에게 한하여 별도로 통보 후 해당 세대를 개방할 예정이오니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7.20.(월)	2026.7.23.(목)	2026.7.27.(월)	2026.7.30.(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4, 12층(인화빌딩)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구광역시 동구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 2019.5.3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현재 전매가 가능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9길 18

■ **공급규모** : 총 445세대 중 잔여세대 1세대 및 부대시설

■ **입주시기** : 즉시 입주가능(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해당 주택의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납부완료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구 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면적	총공급 세대수	무순위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합 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6910179	084.9464B	84B	84.9464 m^2	23.5091 m^2	108.4555 m^2	51.7218 m^2	160.1773 m^2	17.5991 m^2	1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동・호수	층	세대수	아파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 계	**계약시**	**2026.8.31.**
84B	101동 202호	2	1	**162,546,542**	**334,213,458**	**0**	**496,760,000**	**49,676,000**	**447,084,000**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옵션계약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동・호수	층	세대수	구분	품목	유상옵션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공급가	부가세	총금액	**계약시**	**2026.8.31.**
84B	101동 202호	2층	1	발코니 확장	발코니	9,000,000	900,000	9,900,000	990,000	8,910,000
					소 계	**9,000,000**	**900,000**	**9,900,000**	**990,000**	**8,910,000**
				추가선택	시스템에어컨(삼성) 옵션2	6,000,000	600,000	6,600,000	660,000	5,94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삼성)	1,100,000	110,000	1,210,000	121,000	1,089,000
					소 계	**7,100,000**	**710,000**	**7,810,000**	**781,000**	**7,029,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유의하시어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5.16.)와 동일한 공급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상기 공급금액에는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아파트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김치냉장고)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고,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한 사항 그대로 당첨자가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등)의 유의사항은 최조 입주자모집공고(2019.5.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되어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 이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체가 불가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업주체(신탁사, 위탁사)는 금융기관을 알선하지 않으니 분양대금은 분양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 계약자는 잔금납부와 동시에 자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하며, 잔금납부 이후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금 등)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 유무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APT 공급대금	하나은행	165-910059-64904	대호아이피글로벌(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기재
발코니 확장대금	하나은행	165-910059-64904	대호아이피글로벌(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기재
추가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김치냉장고)	하나은행	165-910059-64904	대호아이피글로벌(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기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공급금액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개재하여 입금하시고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입금예시 : 101동 202호 당첨자 홍길동, '101202홍길동')
※ 타인 명의 등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공금대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 등의 처리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공급금액 중 계약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을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계약서 또한「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에 의거 인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분양계약자는 인지세 15만원 중 7만 5천원을 부담)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임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 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프린트 상태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7.23.(목) ~ 2026.8.1(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7.2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계약체결 안내**

서류제출기간	▪ **2026.7.27.(월)**
제출방법	▪ 현장접수 (접수시간 10:00~16:00)
서류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4, 12층
계약체결일시	▪ **2026.7.30.(목)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일정 추후 통보)**
유의사항	▪ 추후 서류 제출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주민번호 전체 표시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발급기간 : 당첨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 등 • 소형·저가주택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계약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현장수납 불가※)**
	주민등록등본(상세)	○			•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	• 미정
	전자수입인지	○		-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아파트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부담)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계약자가 부담하여 구매한 경우 공급체결 이후 사업주체가 계약자에게 지급예정)
대리인 계약시 추가대출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불가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 불가
	위임장		○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분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당첨자는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은 2022년 5월 30일 사용승인을 완료하여 분양희망자 및 계약자는 현재 건물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체결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인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대호아이피글로벌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4, 12층(삼성동, 인화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중흥로 307(죽도동, 포스코건설엔지니어링센터)
법인등록번호	110111-5288695	174611-0002979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웹하드**(https://only.webhard.co.kr/login)**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로그인 화면에서 **반드시 게스트로 로그인 후** 최초 공고문 확인 가능(**게스트 아이디 DHIPG / 비밀번호 1234**)

■ 본 사업은 한국자산신탁(주)가 시행을 위탁받아 진행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이었으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사인 대호아이피글로벌(주)가 실질적 사업주체임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